

# 高麗後期 鄭仁卿의 政案과 功臣錄券의 分析

여은영\*, 남권희\*\*

## 〈目 次〉

|                  |                 |
|------------------|-----------------|
| I. 머리말           | 1. 政 案          |
| II. 資料의 傳來 經緯    | 2. 功臣錄券         |
| III. 鄭仁卿의 家系와 略傳 | V. 政案에 나타난 人事制度 |
| IV. 資料의 判讀       | VI. 功臣錄券의 分析    |
|                  | VII. 맷 음 말      |

## I. 머리말

지금까지 高麗時代의 연구에는 관찬사서인 《高麗史》, 《高麗史節要》등과 文集類, 金石文 등이 기본史料로서 이용되었지만 그 質과 量의 한계로 인하여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절실히 요청되는 형편이다. 특히 자료 편집자의 임의적인 縮約과 變改가 가해지지 않은一次史料로서의 古文書類는 기왕에 활용되고 있는 편집된 자료의 내용을 보완하고 재해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의 遠隔과 변란 등을 거치는 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高麗以前부터 朝鮮初期에 해당되는 古文書類는 극소수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다만 朝鮮中期 以後의 古文書는 奎章閣, 精神文化研究院 등 각종의 기관에서 총어지거나 개인소장 자료의 수집을 강화하고 영인하거나 목록을 계획적으로 간행하고 있어 그나마 편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 嶺南大學校 史學科 博士課程 修了, 前 每日新聞, 서울경제신문 記者(1993년 작고)

\*\* 慶北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助教授

이러한 자료 발굴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할 때, 비록 조선후기에 특정한 씨족의 家乘類에 傳寫된 것이기는 하나 高宗忠烈王代에 任官한 鄭仁卿의 政案과 그의 功臣錄券의 소개도 가치 있는 일의 하나이다. 특히 鄭仁卿은 忠烈王代의 핵심세력으로 《高麗史》에 立傳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墓誌銘도 전하고 있어 이들을 서로 비교 검토할 경우 人物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人事制度의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本考에서 소개하고 검토하려는 鄭仁卿의 政案은 入任-致任-贈謚에 이르는 한 官人の 履歷을 吏讀文으로 망라하고 있는 만큼 자료의 충실성과 완결성은 원자료와 비교하여 크게 손상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알려진 바로는 李子恪의 것을 비롯한 몇개의 政案이 殘存하고 있으나 斷片的인 것이어서 政案의 작성 목적인 官人の 履歷을 始末에 걸쳐 파악하는 데에 제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하여 鄭仁卿의 功臣錄券은 비록 傳寫된 형태이긴 하나 현재까지 高麗時代의 것으로 유일한 예라고 할 수가 있다. 1262년 崔氏政權을 탄도한 柳敬에게 지급된 尚書都官貼이 功臣錄券類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錄券에 제시된 奴婢의 賦給을 담당기관인 尚書都官에서 확인한 奴婢賜給文書라고 하겠다. 따라서 鄭仁卿 錄券은 高麗時代 功臣 또는 그 관련분야의 연구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II. 資料의 傳來 經緯

### 1. 〈瑞山鄭氏家乘〉의 外形과 構成

#### 1) 物理的 形態

이 책은 32.2×21cm의 크기의 五針眼으로 장정되어지고 木活字로 印出된 東裝本이며 版式註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四周單邊, 有界, 11行24字, 小字雙行, 半匡: 25.9×7.8cm.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六瓣花紋黑魚尾, 版心題: 瑞山鄭氏家乘

한편 종이의 지질은 楷紙에 세로방향 굵은 빌의 폭이 1~1.5cm정도로 전형적인 18~19c에 간행된 印書體 地方木活字本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없는 글자와 자주 쓰이는 글자는 만들어진 글자의 수가 적었던 관계로 '由'자의 쓰임이 찾아 그 대신 '甲'자를 돌려서 쓴 것과 같은 예를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내용은 上卷의 30張만 확인이 될 뿐 나머지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다.

## 2) 構 成

이 책의 전체 구성은 18개의 기록으로 나뉘어져 있고 특히 족보를 편찬할 때 누락된 上代의 기록에 중점을 두어 만든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家乘序, 瑞山鄭氏世譜編年圖, 邢部員外郎公實記

忠臣宋尚書邢部員外郎鄭公臣保 高麗中贊襄烈公仁卿合傳

雲溪書院奉安文/鄭雋, 松谷書院常亨祝文/李衡臣, 雲溪書院常亨祝文/  
崔興壁

襄烈公實記-- 行狀, 政案, 功臣都監錄卷, 麗史列傳, 建置沿革, 人物,  
湖山錄, 題詠, 年譜, 松谷書院常亨祝/李衡臣, 雲溪書院移建追享時告  
由文/崔興壁

이 밖에 나타난 기록들의 출전으로 책에 인용된 바로는

墓碣銘/蔡謨, 看月島懸板記/金大德(1588, 8), 瑞山客舍懸板題詠/金大德, 三綱行實, 湖山錄/韓汝賢, 廣陵君鄭頑碣文, 芝峯李睆光類說, 合傳/睦萬中, 行狀/鄭儕, 人物/瑞山輿誌勝覽, 望雲臺, 題詠/鄭粘吉, 高敬命, 李揭, 看月島, 湖山錄序/韓汝賢(1619, 1)

등이다.

그러나 年譜의 마지막에 서로 年記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附記를 하고 있어서,

가만히 살피건대 각파의 家狀에는 年譜가 두 종류가 있으나 그 年紀가 크게 달리 나타나고 事蹟에 빠진 것이 많았다. 咸淳5年(1269)의 乙巳(己巳의 誤植), 大德5年(1301), 洪武4年(1371)의 기록은 실제로 수록된 곳이 없다. 己巳譜에서는 湖山錄, 政案 등에 이르기까지 인용되지 않은 것 이 많았으므로 아마 麗史를 참고하여 초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의 사실들은 다른 여러 책에서 뽑아서 위와 같이 재편집하였다

고 밝히고 있어 편찬의 당시에 일부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 2) 家乘序

이 자료가 만들어지게 된 내력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 이는 1819년 9월 후손 鄭道煥에 의하여 정리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본디 瑞山 鄭氏는 中國의 浙江 金華府 蒲江縣에서 1237년 瑞山으로 이주한 후 鄭仁卿이 瑞山君으로 봉해지고 水原으로 옮겨살게 되었으나 高麗후에 湖南, 湖西, 關西로 흩어지게 되었다. 1819년 당시 조상의 文籍들이 없어지고 또 襫烈公의 政案, 錄卷은 己(己巳)譜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또 年譜, 行狀에는 틀린 곳이 많아서 鄭道煥과 여러 宗人們이 안타깝게 여겨 國乘을 읽거나 諸譜, 文集, 圖誌를 탐색하여 잘못된 곳을 고치고 부족한 것은 추가하여 員外公과 襫烈公의 兩代 기록을 합하여 一篇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때 行狀과 碣로써 編年圖를 만들어 一篇을 추가시켰으며 金山墓祀 이후 각파의 遺事, 狀, 碣 등을 수집하여 교정하고 합쳐서 《瑞山鄭氏家乘》라고 이름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 2. 政案과 錄券의 內容 傳來

鄭仁卿의 政案과 錄券<sup>2)</sup>은 朝鮮 光海朝에 北人의 領袖였던 萊菴 鄭仁弘의 문 중에서 朝鮮 後期에 간행한 《瑞山鄭氏家乘》<sup>3)</sup>에 실려 있으며 특히 政案은 《瑞山鄭氏世譜》<sup>4)</sup>에도 실려 있다. 《瑞山鄭氏家乘》에 실린 錄券의 끝 부분에는,

위의 政案. 錄券은 각 派의 家莊(狀의 誤)에 전해져 있으나 已譜에는 누락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본을 참고하여 싶는다.

는 註記가 있다. 여기에 따르면 鄭仁卿의 政案과 錄券은 朝鮮時代 어느 시기에 瑞山鄭氏 門中의 각 파에서 만든 家狀에 전재되었으며 家乘을 간행하면서 그 중의 세 종류를 참고, 대조한 것을 바탕으로 전재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瑞山鄭氏家乘》은 純祖 19年(1819)己卯 9月 직후에 만들어진 木活字本의 것으로 已譜란 《瑞山鄭氏世譜》의 범례에,

崇禎三己巳(英祖 25, 1749) 三月 日修譜 于陝川蓑衣洞 以活字印出 于  
玄風率禮村

이라는 간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각 파의 家狀은 英祖 25년 이전에 아직 族譜의 형태로 정리, 종합되지 못한 派別 資料였던 것 같다.

## 3. 族譜의 編纂

이 자료에서 年譜나 家狀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된 근거 자료인 族譜들은 몇 차례의

2) 이 자료는 1986년 1월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에 거주하는 萊菴 鄭仁弘의 후손인 정상원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여기에 감사를 표한다.

3) 아래에서 《家乘》으로 줄인다.

4) 아래에서 《世譜》로 줄인다.

간행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瑞山 鄭氏의 家系와 人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 1) 己巳譜 : 家乘에 의하면 1749년 玄風 松禮에서 活字로 印出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世譜에서는 1749년 3월에 陝川의 蓑衣洞에서 修譜하고 玄風 率禮村에서 活字로 刊行되었음을 밝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玄風의 松禮와 率禮는 같은 지명의 다른 표기로 보인다.
- 2) 己卯譜 : 1819년 梧谷에서 校正하고 海印寺에서 印出한 죽보이다.
- 3) 辛未譜 : 《瑞山鄭氏家乘》로 1931년 鄭贊九 등이 편찬하고 木活字로 慶北에서 刊行되었으며 현재 國立中央圖書館에 12冊이 所藏되어 있다.

그 밖의 관련 자료로서는 1965년에 후손인 鄭東九에 의하여 石印本으로 간행된 《瑞山鄭氏家乘》<sup>5)</sup> 上下卷 1冊이 있다.

### III. 鄭仁卿의 家系와 略傳

#### 1. 家系

瑞山 鄭氏의 家系는 家乘에서는 보이지 않고 《瑞山鄭氏世譜》, 《瑞山鄭氏世史》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중 上代에 관한 것으로 中國의 貫鄉은 金華府 蒲江縣으로 浙江地方에 속하며 鄭씨는 榮陽에서 나왔다고 하며 鄭應庶은 宋에서 判將作監을 지내고 鄭儀는 후에 銀青光錄大夫에

5) 鄭東九 編, 瑞山鄭氏世史, 大邱, 幸文堂 石版社, 1965.

추봉되었으며 鄭秀 는 戸部員外郎을, 鄭仁卿의 父인 鄭臣保는 刑部員外郎을 지낸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鄭應沖—儀—秀琚—臣保—仁卿

俊卿(指論郎將)—芬(軍器監)—允和(中郎將)——元生(郎將)

希元

陳(文科密直副使)—元甫(中郎將)

匡理

匡福

이 그림은 鄭仁卿의 직계를 제외하고 윗 代와 관련된 世系만을 간략히 표현한 것이다.

## 2. 政案에 의한 鄭仁卿의 直系

鄭仁卿의 가족관계를 밝히는 자료로 바로 연구의 대상이 된 政案에 나타난 戸口式을 분석하면 대체로 나타나는 바 다음의 그림과 같다.

鄭 儀

陳仁光

鄭秀琚 吳永老

陳明允 梁挺

鄭臣保=吳氏(72세, 高敞郡大夫人) 陳秀=梁氏(60세, 中原郡夫人)

鄭仁卿(52세)=====陳氏(38세, 楊州郡大夫人, 故) =====後聚

1男 鄭臣柔(17세, 臣忠)

1女 召史 16세

2女 召史 13세

2男 巴只 9세 信英

3男 巴只 6세 信和

5男 巴只 2세 信綏

이를 중심으로 보면 그의 母는 高敞郡夫人衛尉丞同正인 吳永老(古名은 愈延)의 女로 政案이 작성되던 鄭仁卿의 나이 52세때 72세로 생존하고 있었으며 그의 妻는 唐 福州郡夫人衛尉尹 陳秀(古名은 平裕)와 中原郡夫人 梁氏(60세)에서 태어났다.

특히 妻系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어서 妻母인 中原郡夫人 梁氏는 本은 忠州이며 父는 檢校 太子詹事太醫少監賜紫金魚袋 梁挺(古名은 允壽)이었다. 또 妻父인 陳秀의 父는 軍器監 陳明允이고 祖는 掌治署令인 陳仁光이었다.

政案에 의하면 鄭仁卿의 妻는 禮賓尹 陳秀의 1女로 38세에 태제하였으나 그 사이에 1男인 鄭璫가 있고 후에 僉議舍人이 되었다.

先娶 : 1男--璫 : 僉議舍人

後娶 : 4男--信英 : 版圖正郎                    2女--蔡宗瑞 : 三司右尹

信丘 : 投曹溪削髮

金光軾 : 司僕官左郎

信和 : 都染署令

信綏 : 懷陵直

後娶에 관련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所生들의 이름과 관직이 墓誌 등의 기록에 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중 3男인 信丘는 戶口등에서는 出家한 까닭에 등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3. 後代

2世      1男 信柔(信忠)=驥與閔氏  
(右文館大提學)=光山金氏

2男 信英=利川徐氏  
(典醫令)

3世      世忠=道康金氏 世功  
(尚書) (右承旨)

達漠=安東金氏  
(首郎將)

4世      璞=固城李氏  
(尚書)

珣=光州金氏  
(吏曹判書)

|    |                                   |                            |                |
|----|-----------------------------------|----------------------------|----------------|
| 5世 | 允崇=林氏 允弘<br>(典農副正) (富城府院君)        | 繼咸 繼詔 繼護<br>(縣監) (錄事) (司勇) |                |
| 6世 | 敦禮=慶州李氏 斯仁 斯信<br>(直長) (禮安郡守) (舍人) | 虔, 恪 而溫 而和<br>而良 而諧        |                |
| 7世 | 渭 成溫<br>(縣監) (副司直)                | 而恭<br>而儉=延安李氏              |                |
| 8世 | 來同 傑<br>(進士) (司直)                 | 而讓<br>而得                   |                |
| 2世 | 3男 信丘<br>(曹溪削髮)                   | 4男 信和<br>(中郎將)             | 5男 信綏<br>(典客郎) |
| 3世 |                                   | 問<br>(郎將)                  | 天齡 天年 天麟       |
| 4世 |                                   |                            | 由安 商           |
| 5世 |                                   |                            | 時安             |

이 기록 가운데 陳氏婦人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1男 信柔는 자료에 따라서 ‘孫’라고도 하며 初諱는 臣忠으로 후에 匡靖大夫都僉議贊成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上護軍 軍簿司事行通直郎尚書로 추봉되었다. 또 2男 信英은 經史에 밟았고 醫書에 능하여 특히 藥, 脈, 針灸에 뛰어나서 어려서부터 조정의 典醫令이 되었다. 한편 1女는 司直 蔡宗瑞의 妻로 출가하고 2女는 廣陵君 鄭頤의 妻가 되었다고 瑞山郡守 朴承俊이 쓴 〈高麗中贊鄭襄烈公神道碑銘并序〉가 《瑞山鄭氏世史》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鄭仁卿墓誌〉에서는 1女가 三司右尹 蔡宗瑞에게, 2女가 司僕官左郎 金光軾에게 출가하였다고 하여 두 자료의 차이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느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 2. 鄭仁卿의 略傳

字는 春叟, 瑞州 富城人으로 父는 刑部 員外郎 鄭臣保이다. 鄭臣保는 宋末에 관직에 나아갔으나 元 太祖가 천하를 통일한 까닭에 高宗24年(1237)에 瑞州 看月島로 건너와 살게되었다. 高敞縣(山德)의 衛尉丞同正 吳永老는 그의 장인이 된다. 臣保가 유배지에서 살던 5년 辛丑 8월에 鄭仁卿이 태어났다.  
高宗28年(1241) 辛丑 8月 日에 태어났다.

鄭仁卿은 어려서부터 섬안의 고기잡이에는 관심이 없었고 책읽기와 수련에 전력하였다.

高宗36年(1249) 9歲 正元山의 절에 머물며 공부하였으며 어느날 뒤편 언덕에 올라 시 2수를 옮고 제목을 “愁登高嶺 邊望雲飛北”이라 바위에 적었다. (9歲; 神道碑銘)

흘연 先人の 묘를 찾아가 우니 봄비가 따라 내렸으며 큰 먼지가 하늘을 덮으며 멀리 있는 외로운 신하에게 떨어졌다.

高宗38年(1251) 辛亥 11歲 2月에 刑部가 大寺洞으로 옮겨 살게 되었고 餘美(扶餘; 사실은 해미 즉 서산)의 文殊寺에 가서 책을 읽고 가업을 이어 門下侍郎平章事 韓自喜의 집을 오가며 배우게 되었다.

妻 陳씨는 中國의 福州人으로 衛尉尹 致仕 陳琇의 딸로서 역시 宋대의 관리를 지낸 집안이었다.

高宗41年(1254) 甲寅 14歲 가을에는 中及第三人으로 及第하여 隊正入御史臺 司錄에 임명되었다.

(湖山錄에는 13歲에 登第하였다고 수록; 湖山은 瑞山의 별호)

高宗42年(1255) 乙卯 15歲에 中部 星化一里에 옮겨 살게 되었다.

高宗43年(1256) 丙辰 16歲에 隊正借인 上將軍으로 벼슬에 올랐다. (신도비명)  
蒙兵이 침입하여 禮山 新昌에 주둔하므로 선생이 종군하여 야간공격으로 승리하였다.

蒙古軍 6월 이산 일대를 다시 침입하므로 穂山(천안군) 등지에 주둔한 몽고군을 야간 기습하였다.

丙辰年の 침입때 19歳의 나이로 종군하여 공을 세우고 孝溫下隊正이 되고 이때 兩國의 言語에 능통하게 되었다. (墓誌)

高宗46年(1259) 己未 19歳 閏10月에 御史臺 司錄을 하다. (양열공실기)

乙未에 御史臺의 司錄을 하다. (신도비명)

高宗47年(1260) 庚申 20歳에 判校尉가 되었다.

元宗 2年(1261) 辛酉 21歳에 貧을 당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산에 초막을 치고 지켜면서 집에 내려오질 않았다.

辛丑(?)에 고향으로 내려가 여막을 짓고 묘를 지켰다. (신도비명)

刑部와 大夫人吳씨의 墓, 夫人陳씨의 墓가 郡의 북쪽 30里 沙場洞에 있다.

元宗 5年(1264) 甲子 24歳 가을 看月島에 精舍를 지었다.

元宗 7年(1266) 丙寅 26歳의 봄에 白雲의 뜻을 본받고자 望雲臺을 앞 봉우리에 세웠으며 집앞의 도량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항상 연못을 보면서 반성을 하였다. 丙寅에 兵을 모아서 穂山에서 蒙古兵을 물리치는 공을 세웠다. (望雲臺碑文)

元宗 9年(1268) 戊辰 28歳에 判神護衛精勇將軍이 되다.

元宗10年(1269) 己巳 29歳에 王을 따라 摄校尉從으로 元에 入朝하였다가 7月에 돌아올 때 婆娑府에 이르러 林衍이 난을 일으켜 王室을 어지럽힌다는 소식을 듣고 일행이 놀라서 의견이 분분하고 일진일퇴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鄭仁卿이 大義를 확정짓고 먼저 皇帝에게 元宗의 복위에 대하여 주청을 올리고 王을 호위하여 다시 皇帝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수차례 高麗의 變亂을 주청하고 皇室과 婚姻을 청하니 그 결과 원병을 얻어 皇帝 軍兵의 보호로 다시 돌아와 高麗를 다시 평정하였다.

左右衛保勝將軍判興威衛攝望同衛金吾衛精勇將軍을 역임하였다. (신도비명)  
황제의 명으로 武德將軍東征省理問官 朝散大夫貼紫金魚袋批法摠郎이 되었

다. (신도비명)

上將軍이 되고 將軍 丁五富, 李之底, 金議光 등과 함께 큰 공을 세웠다.  
元宗11年(1270) 庚午 30歳에 判校尉가 되다. 散員兼御牽龍行首가 되었다. (墓誌)

元宗12年(1271) 辛未 31歳에 判左右衛保勝將軍이 되었다. 卽將兼世子府右指諭  
가 되었다. (墓誌)

元宗13年(1272) 壬申 32歳에 判興威衛精勇將軍이 되다.

元宗14年(1273) 癸酉 33歳에 摄望同衛精勇將軍이 되다. 將軍兼入內侍를 특별히  
제수받았다(墓誌)

元宗15年(1274) 甲戌 金吾衛精勇將軍이 되었다.

忠烈王2年(1276) 丙子 36歳에 아들 柔가 태어났다. 황제의 명으로 武德將軍東征  
省理問官이 되었다.

忠烈王4年(1278) 戊寅 38歳에 朝散大夫貼紫金魚袋가 되다. 다시 將軍兼典法摠  
郎을 제수받았다. (墓誌)

忠烈王5年(1279) 己卯 39歳에 法典摠郎이 되었다.

忠烈王6年(1280) 庚辰 40歳에 王이 軍簿判書春宮翊衛判典으로 올려주고 奴婢  
200人과 田200結을 내리고 성을 瑞山으로 쓰게 하였다.

忠烈王7年(1281) 辛巳 41歳에 龍虎將軍鷹揚將軍이 되었다. (신도비명) 辭職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忠烈王8年(1282) 壬午 42歳에 朝奉大夫 判監門衛 摄大軍知法典司事千牛衛大  
護軍이 되었다. (신도비명) 大將軍으로 加資되었다. (墓誌)

이 보다 앞서의 일로 瑞山尉가 백성의 궁핍과 관리의 폭정을 알고 仁으로서  
백성을 위로하고 위엄으로서 관리를 다스리니 관리들의 무리가尉를 폐하고  
잡아가두어 살인을 저질렀다. 조정에서 瑞州를 폐하고 반은 清州(洪州; 신도  
비명)의 部曲이 되게 하고 반은 公州의 部曲이 되게 하여 매달 초하루에 土  
笠을 쓰게하고 官衙에 오게 하였으므로 이런 까닭에 성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흘어져 빙 터 만이 남게 되었다.

鄭仁卿이 姓을 받은 후 功臣奴婢 50人을(奴婢50口, 田50結; 신도비명) 바치고 瑞山郡을 다시 세워 거주하였다. 또 父母의 묘를 郡 북쪽 10里의 위치에 만들고 冠帶를 郡司에 두어 봄가을로 제사지내게 하였다. 그 후 水原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司巡衛左右衛大護軍 正獻大夫 軍簿判書 春宮翊衛 判典牧使 世子元賓 策安社功臣 圖形壁上 賜錄券 密直司事 西北面都指揮使 匡靖大夫 判三司上將軍 都僉議贊成事 右常侍中軍使로 책봉되었다.

忠烈王 9年(1283) 癸未 43歳에 知典法司事, 千牛衛大護軍으로 奴婢 50口를 바치고 瑞山郡을 다시 세웠다.

忠烈王10年(1284) 甲申 44歳에 아들 信英이 태어났다. 司巡衛大護軍이 되다.

忠烈王12年(1286) 丙戌 46歳에 右衛大護軍, 監門攝衛上將同日과 正憲大夫로 되다. 摄上將軍이 되었다. (墓誌)

忠烈王13年(1287) 丁亥 47歳에 아들 信和가 태어나다. 軍簿判書充春宮翊爲同日判典牧使가 되다.

鷹揚軍上將軍兼軍簿判書를 제수 받았다. (墓誌)

특별히 교지를 내려 一等功臣으로 丹卷을 받았다. (墓誌)

忠烈王14年(1288) 戊子 48歳에 世子元賓이 되었다. 策安社勳圖形壁上賜錄券을 받았다.

元으로부터 功臣으로 책봉되어 죄를 열번 짓기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子孫과 後嗣도 보호를 받는다.

忠烈王15年(1289) 己丑 49歳에 知密直司使가 되다.

三司使未幾遷密直司副使兼典法判書가 되고 權倅의 通婚을 거부하여 관직을 잃었다.

忠烈王16年(1290) 庚寅 50歳에 匡靖大夫判三司上將軍이 되고 12월에 都僉議贊成事が 되었다.

西北面都指揮使, 光靖大夫判三司上將軍知都僉議贊成事가 되었다.

忠烈王17年(1291) 辛卯 51歳에 아들 信綏가 태어나다.

忠烈王18年(1292) 壬辰 52歳에 右常侍, 中軍使가 되다. 政安이 작성되다.

11月 理問所官으로 禁婚令을 위배하여 海島에 유배되었다. (高麗史, 世家)

忠烈王20年(1294) 甲午 54歳에 병으로 사직하였다. (신도비명) 겨울을 圓通臺에서 보내다.

忠烈王22年(1296) 丙申 56歳에 水原으로 옮겨 살았다. (신도비명)

忠烈王23年(1297) 丁酉 57歳의 봄에 瑞山에 省墓를 다녀오다.

忠烈王25年(1299) 己亥 59歳에 判三司遷都僉議門下侍郎上護軍判典理司事의 벼슬을 그만 두었다. (신도비명)

3月 判三司事에 복직되었으며 7月 知都僉議司事에 제수 되었다.

9月에 參理에 제수되고 12월에 贊成事를 받아 불과 몇 개월에 네번의 加賚을 받는 총애를 받았다. (墓誌)

忠烈王27年(1301) 辛丑 61歳에 光靖大夫都僉議侍郎贊成事上護軍判典理司事를 제수 받았으나 이에 나아가지 않았다.

忠烈王28年(1302) 壬寅 62歳에 壁上三韓三重大匡推誠定策安社(仕)功臣匡靖大夫都僉議中贊上護軍 判典理司事에 책봉되었다.

壬寅에 壁上功臣三韓三重推誠定策安社功臣匡靖大夫僉議中贊上護軍判典理司事가 되었다.

忠烈王29年(1303) 癸卯 63歳에 水原의 新庄에서 머물다.

忠烈王31年(1305) 乙巳 65歳에 卒하였다.

銀釘帶 1개, 錦繡袍 1개, 錦 1개

壁上三韓三重大匡推誠定策安社功臣都僉議中贊으로 追紀되었다. (墓誌)

이 해 12월 17일에 향년 69세(?)로 마쳤다.

忠烈王32年(1306) 丙午 66歳 襄烈公이라는 謂號를 받았다.

이 해 12월 19일에 樸峴에서 장례를 치렀다. (墓誌)

#### IV. 資料의 判讀

- ① 원문의 縱書는 橫書로 바꾸었으며 行은 그대로 지켰다.
- ② 원문의 誤字 및 편집자의 細註도 그대로 두었다.
- ③ 좌측의 숫자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입으로 부여된 번호이다.
- ④ 해당 글자 위의 細字, 記號는 < ->-《世譜》에 《家乘》과 달리 표현된 것, ( )-《世譜》에 있고 《家乘》에만 있는 것을 말한다.

#### 1. 政 案

1. 政案<sup>6)</sup>
2. 典議<sup>7)</sup>部上星化一里辛卯戶口(良中)戶奉翊大夫同知密直司事軍簿判書上將軍世子元賓鄭仁卿[乙]准〈準〉[爲內]敎
3. 壬辰十月日(中)部上星化一里辛卯戶口準〈准〉奉翊大夫同知密直司事軍簿判書上將軍世子元賓鄭仁卿年五十二<一>本富城郡\*父追封金紫光祿大夫門下侍郎平章事判禮賓事行尚書刑部員外郎臣保古名彪故祖追封尚書戶部員外郎行禮部承〈賓丞〉同正秀琚故曾祖追封銀青光祿大夫尚書左僕射行儒林郎檢校軍器監儀故母高敞郡大夫人吳氏年七十二外祖衛尉承〈丞〉同\*正吳求老古名愈延故妻楊州郡大夫人陳氏年三十八本福州父衛尉尹致仕陳琇古名平裕祖追封軍器監明先故\*曾祖掌治署令仁光〈老〉故母中原郡夫人梁氏年六十本忠州父檢校太子詹事太醫少監賜紫金魚袋梁樞古名允壽故并產一男信忠年十七一女(召史)年十六二女(召史)年十三節付二男(巴只)年九節付改名信英三男(巴只)年

6) 世譜에는 이 규절이 없다.

7) 世譜에는 別行으로 처리되어 있다.

六節〈節〉付改名信和五男〔巴只〕年二節〈節〉付改名信綏已下不準〈准〉印宣德六年〔恐至元二十八年〕四月二十四日傳準<sup>8)</sup>

4. 典議司上丙申年鍊立後宰樞 冊〔良中〕奉翊大夫知密直司事右常侍上將軍世子元賓鄭仁卿〔乙〕准〔爲內〕教
5. 至順三年〔恐元貞二年〕十二月日司上丙申年鍊立後宰樞冊準奉翊大夫密直司事右常侍上將軍世子元賓鄭仁卿年五十六本瑞州入仕三十七〔恐十六〕壬辰年計入仕〔一丙辰〕父追封金紫光祿大夫門下侍郎平章事判禮部事行尚書刑部員外郎臣保古名彪祖追封戶部員外郎行禮賓承秀琚曾祖追封銀青光祿大夫尚書左僕射行檢校軍器少監儀外祖衛尉承同正吳永老古名愈延本高敞郡簿<sup>9)</sup> 司上棄政案準以錄部所奏
6. 丙辰七月十七日判興威衛保勝將軍李溫下<sup>10)</sup> 左部第二校尉領第二正張 改班本借望有千下軍<sup>11)</sup> 鄭仁卿新溫水稷〔等叱〕三郡〔良中〕松古大王<sup>12)</sup> 屯〔亦〕宿〔爲去乙〕夜戰〔次〕馬別抄〔以〕先入輔佐功〔以〕點御史臺錄事洪宗衍
7. 丙辰八月日名貼部所奏
8. 丙辰七月十七日判將軍李溫下隊正借〔教有〕千下軍鄭仁卿〔矣〕朝謝由出納〔爲〕別無〔爲去乎等用良〕〔頃下〕御史臺錄事金光俊己未六月日名貼部所奏
9. 己未六月十五日判政案施行〔爲良於爲教〕將軍李溫下借隊正鄭仁卿〔矣〕富城郡〔矣〕朝謝由出納〔爲等以〕部今史景蘭免〔以〕奏下部所奏
10. 己未閏十一月十五日令旨興威衛保勝將軍朴暉〔下〕左府第二校尉領隊正〔庫〕不動除借直拜望同下借隊正鄭仁卿御史臺錄事吳君保  
己未閏十一月日名貼部所奏

8) 世譜에는 이 부분까지만 실려 있다. 이부분은 혼히 典議(儀) 戶口로서 약간의 사례가 남아 있다.  
9) 軍簿司의 記일 것이다.

10) 朝鮮金石總覽, 上 pp.473-476의 鄭仁卿 墓誌에는 得孝溫下隊正으로 되어 있다.  
11) 朝鮮金石總覽의 墓誌에 이 부분을 公年甫十九 應募從軍斬首虜多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千下軍은  
募軍을 가리키는 것 같다.  
12) 高麗史, 高麗史節要의 高宗 46년 6월조에는 松古大王이라고 하였다.

11. 己未十一月十五日令旨將軍朴洪〔下〕隊正除借〔教〕同下隊正鄭仁卿〔矣〕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部所奏
12. 戊辰八月二十日判神虎衛精勇將軍洪專〔下〕左第二校尉朴玄敍年滿六十攝望將軍保宜下隊正鄭仁卿御史臺錄事李均戊辰八月二十日判將軍洪專〔下〕校尉攝敍保宜下隊正鄭仁卿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部所奏
13. 己巳七月十日判神虎尉精勇將軍洪專〔下〕左府第二校尉〔庫〕不動除攝望同下攝校尉鄭仁卿御史臺令仇益和〔巴只〕七月十日判將軍洪專〔下〕除攝敍同下攝校尉鄭仁卿〔矣〕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
14. 庚午二月十五日判校尉鄭仁卿〔乙良〕左右衛保勝第二領散員〔良中〕差〔爲良於爲敍〕
15. 至元七年四月十日判散員鄭仁卿〔乙良〕神虎衛保勝第二領攝別將〔良中〕差〔爲於良爲敍〕庚午六月十四日聖旨御牽龍行首〔乙良〕攝別將鄭仁卿下敍部所奏
16. 庚午七月十八日判將軍洪慎〔下〕李寶犯斤由本別將〔望白〕和下校尉鄭仁卿御史臺令史李承韓庚午七月日名貼部所奏庚午七月日判將軍洪慎下別將攝敍白和下校尉鄭仁卿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部所奏
17. 庚午十二月二十日判神虎衛保勝將軍洪慎〔下〕左府第一馬別將軍<sup>13)</sup>〔庫〕不動除攝望同下攝別將鄭仁卿御史臺令史孫安 辛未正月日名貼兵馬部所奏
18. 庚午十二月二十日別<sup>14)</sup> 將軍洪慎〔下〕別將除攝敍同下攝別將鄭仁卿〔矣〕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部所奏
19. 辛未六月四日判左右衛保勝將軍得林〔下〕右部第二卽<sup>15)</sup> 將邊有和逃亡本直拜望鄭仁卿御史臺令史李千益 辛未六月日名貼判部所奏
20. 辛未六月日判將軍得林〔下〕卽將直拜敍別將鄭仁卿〔矣〕朝謝由出納〔爲等以〕

13) 軍字는 잘못 추가된 것.

14) 別字는 잘못 추가된 것.

15) 郎字의 잘못

## 施行

21. 辛未七月分太子府右指誘敎
22. 壬申九月分中軍神騎都領敎御史臺錄事李均 癸酉正月日名貼部所奏
23. 至元九年壬申十二月二十九日判將軍公秀〔下〕中郎將敎得林〔下〕中郎將鄭仁卿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御史臺錄事李均 癸酉正月日名貼部所奏
24. 至元九年壬申十二月二十九日判興威衛精勇借將軍〔敎〕中郎將鄭仁卿〔矣〕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部所奏
25. 癸酉十二月二十五日判興威衛精勇〔庫〕不動除借攝望同衛精勇將軍借鄭仁卿
26. 至元十年六月一日宣旨借將軍鄭仁卿〔乙良〕假內侍〔爲於爲敎〕甲戌正月〔分〕入內侍實案日記施行〔爲良於爲〕御史臺錄事吳瑩 甲戌正月日名貼部所奏
27. 癸酉十二月二十五日判興威衛精勇借將軍〔庫〕不動除借攝〔敎〕同衛精勇將軍鄭仁卿〔矣〕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部所奏
28. 甲戌九月六日判金吾衛精勇將軍攝換〔敎〕興威衛精勇攝將軍鄭仁卿〔矣〕御史臺錄事朴宣 甲戌九月日名貼部所奏
29. 甲戌九月六日金吾衛精勇將軍攝換〔敎〕興威衛精勇攝將軍鄭仁卿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監察司令史朴宣 戊寅二月日名貼
30. 至元十五年二月二十四日下 批鄭仁卿〔爲〕朝散大夫貼紫金魚袋朝謝由出納〔爲等以〕司所申
31. 至元十五年二月十四日判 左右衛精勇將軍金之瑞換本望前將軍鄭仁卿監察司錄事朴桓 戊寅二月日名貼
32. 至元十五年二月二十四日下 批鄭仁卿爲左右衛精勇將軍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監察司錄事徐珣己卯十二月日名貼
33. 至元十六年十二月十八日下 批鄭仁卿典法摠郎余如故朝謝由出<sup>16)</sup> 納〔爲等

16) 朝謝由出로 바로 잡아야 한다.

## 以)施行監察司錄事宋連庚辰七月日名貼

34. 至元十七年七月十三日下 批鄭仁卿爲版圖 郎余如故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監察司錄事沈迪元辛巳三月日名貼
35. 至元十八年三月五日下 批鄭仁卿爲龍虎將軍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監察司錄事沈元迪<sup>17)</sup> 辛巳三月日名貼司所申
36. 至元十八年三月九日判 龍虎軍將軍傳<sup>18)</sup> 衛〔教〕左右衛精勇將軍鄭仁卿謝由出納〔爲等以〕施行藍<sup>19)</sup> 察司錄事尹甫 辛巳二月十三日判鷹揚軍將軍傳衛教龍虎軍將軍鄭仁卿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
37. 右政案〔段〕施行結冊〔爲臥乎事段〕〔向前〕鷹揚軍將軍鄭仁卿〔矣〕所志〔矣段〕〔度度〕二加轉受職〔爲乎〕政案加施行〔向教是事〕司上壬申年政案審〔是白內矣〕〔矣〕政案終下元幅〔良中〕結冊〔教事是去有乙〕右政案〔亦〕終下元幅〔是乎等〕〔回于〕〔始乎〕破落〔爲置有良梳〕加施行〔向事〕及退準備〔向事〕〔悶只〕〔望白去乎在等以〕連次〔爲白良糸〕〔作內〕監當〔教是糸〕時職〔以〕〔更良〕結政案成冊〔爲遺〕〔頃下〕戊子五月二十八日施行朝謝由斜準
38. 至元十九年十二月二十一日判 監門衛攝大軍<sup>21)</sup> 同日下 批朝奉大夫
39. 至元二十年十二月二十二日下 批知典法司事同<sup>22)</sup>下 批千牛衛大護軍
40. 至元二十一年九月二十五日下 批司巡衛大護軍
41. 至元二十三年二月四日下 批右<sup>23)</sup> 衛大護軍同年<sup>24)</sup> 十二月二十三日下 批監門衛攝上將軍同日下 批正獻大夫

17) 〈34〉에서는 沈迪元으로 되어 있다.

18) 轉의 잘못일 것 같다. 〈36〉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 監의 잘못이다.

20) 主事(埠籤司의 吏屬) 일 것이다.

21) 大護軍으로 보인다.

22) 同日의 倒置일 것이다.

23) 左右衛의 말락일 것이다.

24) 別行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42. 至元二十四年六月十四日下 批司巡衛上將軍同年<sup>25)</sup> 八月七日下 批興威衛上將軍同月十五日下批神龍衛上將軍同年十二月二十七日下 批鷹揚上將軍同日下 批軍簿判書充春宮翊衛同日判典牧使
43. 至元二十六年六月二十六日下 批奉翊大夫三司使上將軍
44. 至元二十七年三月十八日下 批副知密直司使典法判書余并如故
45. 至元二十八年十二月二十一日下 批世子元賓
46. 至元二十九年閏六月二十二日下 批知密直司使事余并如故
47. 至元二十九年七月四日下 批右常侍余并如故
48. 至元二十九年七月五日下 批中軍使朝謝由出納〔爲等以〕施行
49. 大德三年三月日下 批匡靖大夫判三司上將軍同年七月十一日下 批知都僉議司事典理判書余併如故同年九月二十一日下 批都僉議參理余并如故
50. 大德三年十二月二十九日下 批都僉議贊成事余并如故
51. 大德五年九月二十九日下 批匡靖大夫都僉議侍郎贊成事上護軍判典理司事〔仍〕令致仕
52. 大德九〔恐六〕年八月十九日下 批壁上三韓三重大匡推誠定策安社功臣匡靖大夫都僉議中贊上護軍判典理司事〔仍〕令致仕
53. 大德十年二月日 贈謚襄烈

## 2. 功臣錄券

1. 功臣都監錄卷
2. 奇一等功臣正獻大夫軍簿判書鷹揚軍上將軍充春宮翊衛鄭仁卿右員〔乙〕三韓後壁上功臣楊規等錄卷〔良中〕奇〔是臥乎事段叱〕式目都監記事 嘉
3. 至元二十五年五月日名貼

---

25) 위와 같음.

4. 至元二十四年三月二十六日右承旨林丁杞口傳 王旨去乙(恐已)己年(分)隨從  
 [爲白在]員將[等矣段]大[行李][教是]婆婆府[進叱教是臥乎]權臣林衍[亦]  
 私門[以]結黨動搖 王室[爲白]專命構亂陰謀逆命[爲臥乎所乙]聞[是遣]還入  
 帝[所教是次]議論紛紜持疑未決[爲有去乙]一心向上始終輔佐[爲白乎施]鎮  
 定三韓社稷永安[教是只爲使內良]功業重大帶礪難忘[教事是去有良系]一  
 二等[以]田民賜給[教事是去有而亦]辛未年(分)一般隨從[爲白在]員將[等乙  
 良][并只]田民加給[教事是去有等以]己巳年(分)隨從功臣[乙良置]一二等  
 [以]勿論[爲]田民加給[爲良爲教矣]一等上將軍鄭仁卿大將軍丁五富李之底  
 將軍金議光[等乙良][前矣]賜給田畠并十五結[良中][導良]各田畠一百結例  
 [以]賜給[爲]子孫傳持[爲良於爲教是齊]三司使金應文將軍車得圭[等以][段  
 身]故[爲乎事去有良允][并以]田民加給[教所][不喻][去有在而亦]一般 上  
 恩[是白教乙]不許[不喻][去有在等以][前矣]賜給[教]田畠并十五結[良中]  
 [導良]各田畠一百結例[以]子息[等亦中]賜給[爲良於爲教矣]右一等員將  
 [等矣]奴婢[叱段]下教比[此爻以]壬午年 王旨[良中]奴婢[并]四口[乙]賜給  
 [教事是去有在亦]二等知申事羅裕上將軍池允輔大將軍林庇副知密直司事致  
 仕李承衍大將軍黃就羣周石將軍金富允中郎將梁貯[等乙良]賜給[教矣][前  
 矣]田畠[并]十五結奴婢二口[良中][導良]各田畠[并]一百結奴婢[并]四口例  
 [以]加給子孫傳持[爲良於爲教是齊]正郎白佐明[叱段][矣身]故[爲乎去有在  
 以亦]一般 上恩[是白教是在乙]不許[教所][不喻][去有在等以][前矣]賜給  
 [教]田畠[并]十五結[良中][導良]田畠[並]一百結奴婢二口[良中][導良]四  
 口[等乙]子孫[亦中]加給[向事]式目都監[戈只]啓[爲使內良於爲教等用] 旨  
 出納所司[爲乎亦中]藍<sup>26)</sup>察司令史申錫丁亥十二月日名貼判[內乙]旨[并只]  
 依貼施行[爲道]申報[爲乎][味乙]出納[爲置有去乎等乙用良][更良]當使與

26) 監의 잘못이다.

監察司同議申聞〔令是白乎亦中〕至元二十五年六月一日左副承旨判秘書寺事  
文翰學士知判圖司事安裕伏奉 王旨依申〔教事是去有良允〕錄券施行

## 5. 至元二十六年己丑五月日都監員

|                                 |                      |
|---------------------------------|----------------------|
| 判官禮賓承同正                         | 趙臣烈                  |
| 禮賓注簿同正                          | 朴芸                   |
| 典理司員摠郎朝願大夫文翰侍讀學士充史館修撰官          |                      |
| 知製誥春宮侍讀事                        | 鄭玄繼 知 <sup>27)</sup> |
| 知申事正獻大夫密直司左承旨判大府寺世子會事           | 柳啓                   |
| 判書奉翊大夫密直學士文翰學士承旨                | 權坦 {阻}               |
| 判書奉翊大夫知密直司事上將軍世子元賓              | 蔡謨                   |
| 判書匡靖大夫僉議參理上將軍世子貳傳               | 印侯                   |
| 判書匡靖大夫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監修國事世子<br>師     | 許珙                   |
| 監察司別監奉翊大夫知密直司監察大夫寶文署大學<br>士世子元賓 | 安職印                  |

## 6. 皇帝福陰裡〈理〉特進上柱國開府儀同三司征東行中書省右丞/

相駙馬高麗國王一等功臣宣授武德將軍征東行中書省理/

問所官奉翊大夫知密直司事左常侍上將軍鄭仁卿自漢唐/

以來至于/

本朝臣下有殊功異烈則圖形壁上少〈小〉以厚賞比乃有國有家/

者之通制所以旌善勸〈勸〉後世然觀古代臣庶之功徒以邊境上/

對敵決勝或朝廷間制變定策之功耳越已巳年以天下會同/

寡人上朝利觀回來到婆婆府聞權臣林衍擅柄 亂動搖王/

室一行震驚議論紛紜一進一退持疑未決爾國耳忘家數陳/

27) 잘못 첨가된 것이다.

利害挾護寡躬退入 帝所奏以 本朝事變請昏天戚果蒙/  
 帝眷勅兵護還慎整〈正〉三韓流榮萬國〈代〉式至今日休予嘉其功記/  
 其勞圖形壁上賜以州丹〈冊〉卷乃給田民租答〈答〉忠誠然而功大而賞/  
 微有兼欠之意謹聞 上國賞功臣之制客有犯禁者不加於/  
 法雖至九犯終不之罪以至十犯不得以〈已〉論之至於子孫亦如/  
 之今欲循 上國之制確行而不變爾雖有十犯不踰十世終/  
 赦宥將使〈仕〉後〈九〉世子孫永受其賜當余〈予〉蒞政之時無慎致疑至於/  
 後嗣君王宜 賦意堅行比制但欲要竭輔弼之力永保國家/  
 故茲詔示想宜知悉/

## V. 政案에 나타난 人事制度

鄭仁卿의 政案은 내용상 〈1〉·〈2〉의 서두, 〈3〉·〈4〉·〈5〉의 戶口, 〈6〉~  
 〈53〉의 官歷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3〉·〈5〉부분은 高麗祖의 戶口로서  
 남아 있는 사례에 흔히 보이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政案에서는 「典議」字가 머리에 붙은 戶口가 政案 형식의 한 구성요  
 소였음을 보여준다. 이 典議戶口는 政案에 오른 官人의 家系를 증빙, 확인하는  
 기능을 가졌을 것이다.

이 戶口에 수록된 家系의 범위는 戶主·父·祖·曾祖·母·外祖 및 妻·妻  
 父·妻祖·妻曾祖·妻母·妻母父, 그리고 戶主의 幷產이다. 이 戶口는 戶主와  
 戶妻의 기계 수록범위가 4祖에 걸쳐 도일하며 戶主의 母系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 또 母에 대해서는 本貫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戶妻의 父의 4祖가  
 수록되어 있다.

〈3〉의 辛卯戶口는 忠烈王 17년(1291)에 작성된 戶口일 것이며 典議(儀)寺에서는 〈2〉에 제시된 「奉翊大夫同知密直司事軍簿判書上將軍世子元賓」인 鄭仁卿의 가계를 검토하기 위해 〈辛卯戶口〉를 대조하였을 것이다. 政案〈4〉에서도 「奉翊大夫同知密直司事軍簿判書上將軍世子元賓」인 鄭仁卿의 가계를 검토하기 위해 戶口를 검토하였다. 단 이 때의 기본 호구는 〈5〉의 말미에 제시된 것처럼 簿(軍簿)司의 政案에 포함된 〈3〉의 호구였을 것이다.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시점은 丙申年(忠烈王 22年)이었다. 즉 〈5〉의 戶口에서 鄭仁卿의 나이는 56세였는데 「世譜」대로 〈3〉에서 그의 나이가 51세였다면 5년 뒤는 丙申年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政案 〈4〉·〈5〉에 따르면 丙申年은 宰樞의 政案 즉 「宰樞第 冊」에 鄭仁卿의 政案을 編屬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3〉과 〈5〉의 호구는 새로운 직함의 빌령에 따른 행정적 필요절차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단 政案 〈5〉의 戶口에 수록된 가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통용된 4祖戶口였는데, 이는 〈3〉의 戶口를 원본으로 한 抄本의 성격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정안에는 人事發令의 근거가 두가지로 나누어져 제시되었다. 즉 본 정안에 따르면 〈28〉까지의 승급-攝將軍까지는 「判」 또는 「判…敎」의 형식을 취하지만 〈30〉에서의 「朝散大夫」부터는 「下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將軍」은 正4品의 西班職으로서 文散階 從5品下의 朝散大夫에 비해 상위이다. 그러나 「攝職」은 正職에 임용되기 전의 假職이므로 摄職과 正職은 녹봉액에서도 差等의 이었다. 예를 들면 「仁宗朝更定祿俸」에서 상위의 摄職은 次下位의 正職과 동일한 대우가 규정되었다.

본 政案은 官職階의 세분화된 승급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借望 또는 摄望-除借望 또는 除攝望-借職 또는 摄職-除借 또는 除攝眞拜이며, 「借」와 「攝」을 다 거칠 경우 「借」는 「攝」보다 하위의 선행적 단계이다. 이러한 승급단계를 보면 「望」은 단순히 官職 취임을 위한 후보자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필수적 승급단계라고 하겠다.

〈表 1〉 正職과 摄職의 祿俸額

| 祿俸額     | 正職   | 攝職   |
|---------|------|------|
| 300石    | 上將軍  |      |
| 233石 5斗 | 大將軍  | 攝上將軍 |
| 200石    | 諸將軍  | 攝大將軍 |
| 120石    | 諸中郎將 | 攝將軍  |
| 76石 10斗 | 諸衛郎將 | 攝中郎將 |
| 46石 10斗 | 諸衛別將 | 攝別將  |
| 33石 5斗  | 諸衛散員 | 攝散員  |
| 23石 5斗  | 攝散員  | 校尉   |
| 16石 10斗 | 諸衛隊正 |      |

이러한 승급단계를 토대로 한다면 摄將軍은 正5品의 中郎將에 준하여 발령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政案 〈23〉에서 中郎將의 발령형식은 「判…敎」이며 실제로 〈24〉의 借將軍, 〈27〉의 摄將軍의 발령형식도 모두 「判…敎」이다. 이 점은 中郎將보다 하위인 從5品下의 文散階 朝散大夫를 발령한 형식이 下批였던 것과 비교된다. 이로 미루어, 본 政案으로부터, 5品 이상의 文散階는 그것에 대응하는 實職의 武班職보다 중시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 원인은 正5品職인 中郎將이하가 文散階로는 郎階로 대우되어 大夫階-엔 아래가 朝散大夫-와 구별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점은 文班職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음이 시사된 바 있다.<sup>28)</sup> 이에 대한 法制的 설명으로는

무릇 選法은 성종 8년 4월에 비로소 京官의 6품 이하는 四考加資하고 5품 이상은 반드시 取旨토록 함을 常式으로 하였다.<sup>29)</sup>

28) 朴龍雲, “高麗時代의 文散階,” 震檀學報, 52, 1986, pp.33-37 참조.

29) 高麗史, 卷75, 選舉3 銓注 凡選法.

는 것을 들어두고자 한다. 즉 鄭仁卿 政案에서 <30>의 朝散大夫 授階 이후의 발령형식인 「下批」를 取旨에 의한 것으로 보고, 또한 摄將軍 이전의 발령형식인 「判」·「判…敎」를 四考加資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는 점이다.<sup>30)</sup>

『高麗史』에서 행정절차를 규정한 격식, 또는 법조문에 흔히 判의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判에는 관례에 의한 반복적 명령·조치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

- 30) 鄭仁卿 政案보다 약 100년 앞선 金純의 墓誌에도 政案이 전재되어 있다.

攝中郎將부터는 批로써 발령하고 있다. 中郎將이 正5品職이므로 摄中郎將은 正6品職인 郎將과 같은 직급이었을 것이므로 法制와도 일치한다. 참고로 墓誌에서 확인되는 金純의 政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金正豐五年(毅宗 14, 1160) 庚辰 三月 判 以侍從信者衛 至於涉江 命勅未當暫雉終始有功 故初調爲隊正
- ② 戊子 三月 判 以業精兵陣 進其祿年 轉攝敎尉
- ③ 己丑 三月 判 除攝拜眞
- ④ 庚寅 十月 判 以隨寵侍衛之功 轉攝散員
- ⑤ 其年 十二月 判 除攝拜眞
- ⑥ 辛卯 十二月 判 轉攝別將<自攝散員 至攝別將 皆以別制加焉>
- ⑦ 甲午 十二月 批 授攝中郎將領軍
- ⑧ 乙未 十二月 批 除攝副眞
- ⑨ 丙申 十二月 批 授攝將軍
- ⑩ 戊戌 十二月 批 除攝即眞
- ⑪ 辛丑 十二月 批 授千手衛 大將軍
- ⑫ 壬寅 十二月 批 授攝□□將軍
- ⑬ 癸卯 十二月 批 授兼禮賓卿
- ⑭ 丙午 十二月 批 授直門下省
- ⑮ 丁未 十二月 批 授千牛衛攝上將軍判衛尉事 餘竝如故
- ⑯ 戊申 十二月 批 授 衛上將軍殿中監兼太子右□道率副率
- ⑰ 己酉 十二月 批 授戶部尚書龍虎軍上將軍
- ⑲ 庚戌 四月 批 授兵部尚書<主張戒政>
- ⑳ 其年 十二月 批 復以戶部尚書 入樞密院 為副使
- ㉑ 辛亥 十二月 批 授兵部尚書同知樞密院事
- ㉒ 壬子 十二月 批 授吏部尚書知樞密院事
- ㉓ 甲寅 正月 別批 授銀青光錄大夫參知政事禮部尚書
- ㉔ 甲寅 十二月 批 授金紫光祿大夫守大尉上柱國 餘竝如故
- ㉕ 乙卯 十二月 批 授中書侍郎平章事 餘竝如故
- ㉖ 丙辰 十二月 批 授同中書門下平章事判戶十(部)事 餘竝如故<自兵部尚書 至判戶部事 皆帶 上將軍 凡公之選轉 一無職等 必循資序>

金純의 재구성된 政案에는 ⑯의 摄別將까지는 判에 의해서, ⑰의 摄中郎將 이후는 批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 단 判에는 別制가 가해지기도 하였고 批에도 別批가 따로 있었다. 鄭仁卿 政案의 <10>·<11>에서 借隊正으로부터 隊正으로의 直拜에 「令旨」가 근거로 되었고, <26>에서도 「宣旨」에 의해 借將軍으로부터 内侍로 入屬되었다. 이 令旨나 宣旨는 金純 政案의 別制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鄭仁卿 政案의 경우, 摄將軍 이하의 인사는 국왕의 개별적 판단 또는 영향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규정 자체에 의하여 단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朝散大夫 이상은 인사규정은 물론 국왕의 적극적 판단 또는 영향력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의 형식에도 예외적인, 불투명한 부분이 눈에 띈다. 즉 鄭仁卿 政案 〈36〉에서 膚揚軍 將軍으로부터 龍虎軍 將軍으로의 轉補에 判이 사용되었으며 〈38〉에서도 監門衛 摄大護軍에 朝奉大夫의 文散階를 가하는 데에도 判이 사용되고 있어 批와 判이 일정한 職. 階의 인사에 혼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官職者를 새로 政案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형식으로 鄭仁卿 政案의 〈4〉에 나타난 바로는,

「典議司上 丙申年鍊立後寧樞茅冊良中 奉翊大夫知密直司事右常侍 上將軍世子元賓鄭仁卿乙 淮爲內敎」

라고 하여, 鄭仁卿이 從2品의 奉翊大夫에 오름으로써 그의 政案은 宰樞政案에編屬되었고, 그 법률적 근거는 「敎」였다. 이 「敎」字를 명령·법률이 아닌, 단순히 吏讀의 존칭어미로서 「하시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풀이도 있었으나<sup>31)</sup> 語文體系로 볼 때 「敎」字는 어휘 끝에 올 수 없는 것이다. 「淮爲內敎」는 「준(대조) 하는 敎」로 풀이해야 할 것으로 高麗의 다른 政案에서,

「典議 政案

司上丙申年鍊立後三品政案第十七冊良中顯大夫知春州兼勸農防衛使李子脩乙率爲內勅」

이라고 하며, 鄭仁卿 政案의 「淮爲內敎」를 李子脩 政案에서는 「淮爲內勅」으로

31)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에 인용된 각 戶口 침조.

표현하고 있어서 前者の「教」는 後자의「勅」과 대응하기 때문이다. 「勅」이 결코  
吏讀의 존칭표시인 「教-이신·이산」으로 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32)</sup>

이어서 본 政案의 작성에 기초가 된 名貼. 朝謝由의 작성 및 그 시행절차에 대해  
서 검토키로 한다. 본 政案의 주인공인 鄭仁卿은 〈6〉에서 千下軍의 馬別抄로서,  
고려에 내침한 松古大王을 선봉으로 격퇴하여 국가를 보좌한 공으로 點-무반 후보  
자로 등재되는 것-된 것이 丙辰(高宗 43, 1256)년 7월 17일이었고 다음달에 名貼  
되었다. 〈8〉에서도 丙辰年에 千下軍이었던 鄭仁卿을 「判…教」로서 借隊正에 임  
용하고 朝謝를 거쳐 出納한 뒤 3년이 지난 己未(高宗 46, 1259)년 6월에 名貼이  
이루어졌다. 任用과 名貼이 이루어지는 사이의 기간은 〈8〉이 3년, 〈29〉가 4년이  
고 나머지는 모두 같은 해이다.

名貼의 시행부서는 〈28〉의 甲戌(元宗 15, 1274)年 이전에는 御史台였으며,  
〈29〉의 戊寅(忠烈王 4, 1278)년 이후에는 監察司였다. 그리고 실무자는 이들  
기관의 錄事. 令史 등의 吏屬이었다. 《高麗史》百官志에 따르면 忠烈王 원년에  
御史台가 監察司로 개칭되었으므로 결국 名貼權은 시종 御史台 계통에 있었다고  
하겠다.

名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朝謝를 거친 出納이 있는 다음, 그에 따라 인사담당  
부서인 吏·兵部의 所奏(申)가 필요하였다. 결국 吏·兵部의 所奏 위에 이루  
어지는 名貼은 인사 결과의 검토 내지 확인작업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인사의 과정은 ①「判」·「判…教」·「下批」로  
서 발령- ② 朝謝를 거쳐 出納·施行- ③ 御史台의 검토·확인이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인사의 최종단계에 御史台가 관여한다는 것은 台諫의 告身에 대한 署經  
權을 연결짓게 한다. 단 鄭仁卿 政案의 名貼者는 御史台의 吏屬이므로 名貼 그  
자체는 署經일 수 없다. 그러나 인사가 名貼으로써 완결되는 한 名貼과 署經을

32) 李樹健, 慶北地方古文書集成, 延山, 嶺南大學校, 1981, p.790. 李子脩 政案

따로 떼어놓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名貼은 台諫의 署經이 이루어진 뒤에 필요적 절차로서의 「人事記錄 整理畢」이 아닌가 한다.

한편, 본 政案에 따르면 모든 人事가 반드시 名貼에 의해 완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37>에서 至元 19년(忠烈王 8, 1282) 12월 21일 監門衛 摄大護軍에 임용되고 朝奉大夫의 文散階를 받고부터 <38> ~ <52>까지에 判 또는 下批로써 이루어지는 인사에 전혀 名貼이 수반된 것과 <38>에서 判과 下批가 같은 날 내려져 시행된 인사에서 名貼이 수반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名貼은 下批에 필요적 절차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名貼은 御史台(監察司)의 소관이므로 名貼을 필요치 않는 下批에 의한 인사는 御史台(監察司)의 개입을 허용치 않는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鄭仁卿 政案에 따르면 文散階로는 朝奉大夫, 職으로는 摄大護軍을 선으로하여 인사의 질적인 단층이 설정되었다고 생각된다. 국왕은 직접 임명권을 행사하는 上位職階에 대해서는 臣權의 대표자로 간주되는 御史台(監察司)의 개입을 차단하려고 한 조치가 下批일 것이다.<sup>33)</sup>

朝謝에 대해서는 비록 朝鮮朝의 것이기는 하나 실물이 남아 있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 朝謝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 본 다음 鄭仁卿 政案에 나타난 朝謝의 내용을 검토키로 한다. 永樂 7년(太宗 9, 1409) 兵曹가 발급한 朝謝帖<sup>34)</sup> 을 예로 들어보자.

兵曹爲朝謝事司憲府兵房書吏李子烈永樂七年

三月二十七一名關曹所甲永樂七年三月初四日

判修義副尉龍騎巡衛司前領副司正敎學生沈彥冲作還

朝謝由移關爲 行合下須至帖者

右下副司正沈彥冲准比

33) 朝鮮朝에 들어오면 14품은 王旨로, 59품은 門下府에서 奉敎給牒으로 발령토록 하였다. 여기에서 王旨은 고려조의 下批에, 敎牒은 「判…敎」에 대응된다고 본다. (「改告身式一品至四品賜王旨 日官敎 五品至九品 門下府奉敎給牒 曰敎牒」太祖實錄, 卷2, 元年 10월 癸酉)

34) 朝鮮史料集真解說, 第一輯, 朝鮮史料編修會, 1935.

永樂七年三月二十八日

朝謝事

令史金

左參議(押) 正郎(押) 佐郎(押)

帖判事 判書

右參議(押) 正郎(押) 佐郎(押)

위의 朝謝帖은 형식상 완결적인 것으로 武班 從8品階인 修義副尉와 武班 從7品職인 龍騎巡衛司 前領 副司正에 學生 沈彥冲을 「判…敎」로써 임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인사의 주체는 대상자가 武班이므로 兵曹로 되어 있다. 본 朝謝帖의 서두 「兵曹爲朝謝事」는 兵曹가 본 인사의 주무부서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인사에 대해 심사권을 가지는 司憲府의 兵房-司憲府에는 6曹를 관할하는 6房 조직이 있었던 듯-胥吏가 최하 실무자로서 (兵)曹의 所申에 名關 즉 名貼한다.<sup>35)</sup> 즉 司憲府의 署經이 이루어져 문서의 정리가 끝난 것이다. 세번째로, 兵曹의 所申이란 永樂 7년 3월 초4일에 「判…敎」로써 修義副尉 龍騎巡衛司 前領 副司正에 임용하려고 하는 沈彥冲의 任用願인 朝謝를 거쳐 移關하니 아래와 같이 꼭 결재해 달라(合下須至帖)는 것이다. 끝으로 이 朝謝를 거쳐 名關 즉 名貼이 이루어짐으로써 司憲府의 동의는 문서로 정리되었고, 이에 따라 인사의 형식적 결재가 兵曹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결재일자는 名關(名貼)이 끝난 다음날인 永樂 7년 3월 28일이며, 결재에 참여한 자는 佐郎(2人) · 正郎(2人) · 左右參 · 判書 · 判事 등 5品官 이상의 8人이었고, 정리 실무자는 令史 1人이었다.

조선조의 인사과정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전체로 鄭仁卿 政案의 朝謝를 검토하기로 한다.

〈23〉의 예를 보면, 至元 9년 壬申 12월 29일 「判…敎」로써 將軍 公秀 화하의 中郎將으로 부터 將軍 得林 화하의 中郎將으로 鄭仁卿을 전속시키려는 人事願으

35) 關은 文書라는 뜻으로 貼과 통한다. 「名關」이란 따라서 關에 담당자의 이름을 기입한다는 정도의 뜻일 것이다.

로서의 朝謝를 거쳐 출납 시행되고 이어 御史台의 錄事 李均이 癸酉 正月 日에 (兵)部의 所奏에 名貼하는 두 절차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兵)部의 所奏는 내용상 「判…敎」에 의한 朝謝를 거친 출납 시행을 가리킨다. 앞서의 沈彥冲 朝謝帖에 비추어 보면 鄭仁卿 政案에는 결재자의 결재부분이 없다. 이는 政案이 완결된 인사기록의 연속적 合錄인데 비해 朝謝帖은 인사의 필요적 절차를 문서화하여 그 내용을 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한 것에서 오는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인사의 주체인 吏·兵部에서 人事願(朝謝)을 御史台에 회부하여 동의(署經)를 얻으면 인사는 사실상 끝나게 되므로 政案에는 吏·兵部의 결재부분이 생략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政案에는 朝謝를 거친 출납 시행과 이에 대한 名貼 사실만이 수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判…敎」에 의한 朝謝를 吏·兵部에서 작성하면서 왜 여기에 國王의 명령을 가리키는 「判…敎」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까? 高麗時代에는 國王의 명령으로서 制·勅·詔·旨·判·敎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그 성격도 각각에 있어서 일관적이지 못해 의미 파악이 곤란하다. 본 政案에서는 「判」·「判…敎」는 國王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하위직 인사가 모두 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人事根據의 하나인 「判」·「判…敎」는 國王權의 형식적 관여 수단으로 보인다.<sup>36)</sup>

이에 비해 「下批」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5品 이상 인사는 「判」·「判…敎」와 달리 國王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判」·「判…敎」란 본 政案의 경우 國王의 위임에 의해 吏·兵部에서 인사권을 관례적으로 행사할 때에 사용되는 國王의 명령 형식이라고 판단된다.

36) 예를 들면 恽愍王 5년(1356) 6월의 敎에 「其三品以下 與宰相共議進退 七品以下 吏兵部擬議奏聞」(高麗史, 卷75, 選奉3, 銓注 凡選法)이라고 하여 3 ~ 6品의 인사는 국왕이 재상과 의논하여 시행하며 하위직인 7品 이하는 吏·兵部에서 시행하고 보고만 하게 되어 있었다.

## VI. 功臣錄券의 分析

鄭仁卿의 功臣錄券은 그 구성면에서 〈1〉의 文書題名, 〈2〉의 受勳 대상자 및 功臣號·文書의 정리기관 및 정리자의 제시, 〈3〉의 名貼·시행일자, 〈4〉의 錄功 사유 및 포상 내용, 〈5〉의 錄功 관여자, 〈6〉의 受勳 대상자에 대한 策功文으로 나뉘어진다.

〈1〉의 文書題名은 朝鮮初 開國原從功臣 鄭津이나 沈之伯의 錄券<sup>37)</sup>에는 단순히 「功臣都監」이라는 錄功·시행부서만 제시되어 있지만 鄭仁卿 녹권의 시기가 앞서므로 「錄券」자가 자료의 전사과정에서 반드시 추가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1262년의 尚書都官貼」<sup>38)</sup>도 그 文書題名은 「尚書都官貼」이라고 하여 문서의 시행기관 명칭에 「貼」자가 連記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녹권의 〈2〉는 鄭津·沈之伯의 녹권 제2~3행 및 제4행 전반과 흡사하다. 즉,

功臣嘉靖大夫吏曹典書鄭津本奉化 – ⑦

右員乙原從功臣錄券良中奇是臥乎事比段洪  
武二十五年十月 日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  
二十五年十月初九日都承旨安景恭次知口傳  
王旨…⑧

에서 ⑦에 錄功 대상자의 功臣號·階·職·姓名·本貫이 열거되어 있는데 鄭仁卿 녹권에서도 本貫만이 빠져 있을뿐 나머지는 같다. 단 정인항 녹권에서는 「右員乙三韓後……式目都監記事盧」가 앞부분에 연기되어 있는데 이는 鄭津 녹권과 같이 別行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鄭津·沈之伯 녹권에서는 承旨가 王旨를 口傳하고 都評議使司가 공신

37) 朝鮮史料集真解說, 第一輯, pp. 253-263.

38) 許興植, “1262년 尚書都官貼의 分析(上),” 韓國學報, 27輯(1982. 여름)

책봉의 형식상 주무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鄭仁卿 녹권에서는 承旨가 王旨를 口傳하여 式目都監에서 공신에 책봉된 鄭仁卿을 三韓後壁上功臣楊規 등의 녹권에 불인다고 하였다.<sup>39)</sup> 따라서 鄭仁卿·鄭津·沈之伯 녹권을 비교하면 식목도감의 功臣冊封 기능은 뒷날의 都評議使司로 옮겨지게 되었다.

鄭仁卿 녹권의 〈3〉부분도 〈2〉에 連記되어 있었을 것이다. 衛社功臣 柳敬의 녹권을 포함하는 「1262년 尚書都官貼」의 제3 '4행에서도 '都兵馬記事池洪庚申八月日名貼'이라고 되어 있는데다가 鄭仁卿 녹권의 〈2〉는 그 자체만으로는 시행일자가 없어서 공문서의 형식상 완결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鄭仁卿 녹권은 최종적으로 式目都監에서 名貼되었고 鮮初의 鄭津 錄券 등은 都評議使司에서 출납된 차이만 있으며 서두의 형식은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신책봉의 실질적 主掌機關은 鄭仁卿 녹권에서는 監察司(御史台)였다. 즉 〈4〉의 끝 부분에,

式目都監戈只啓受使內良於爲敎等用 旨  
出納所司爲乎亦中藍(監)察司令史申錫丁亥十  
二月日名貼判內乙旨并只依貼施行爲遣申報  
爲乎味乙出納爲置有去乎等乙用良更良當使  
與監察司同議申聞令是白乎  
(식목도감에서 〈전답·노비 등을〉 啓受한 것으로써, 旨의  
출납을 맡아 할 때 監察司의 令史 申錫이 丁亥 12월 일  
名貼함. 判한 旨와 더불어 貼에 의해 시행하고, 申報한 뜻을  
출납하려거든 다시 當使와 監察司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라고 하여, 공신책봉에 監察司(御史台)가 관여하여 名貼까지 하였으며 名貼에 의

39) 式目都監이 형식상 功臣冊封의 主掌機關이었음은 鄭仁卿의 錄功보다 약간 늦은 忠肅王 6년 元庶甲에 대한 奬獎의 奏請에서도 확인된다.

「忠肅六年 式目都監請 加 奬推誠奮勇定亂匡國功臣號」(高麗史, 卷104, 元冲甲傳)

해 시행하고 申報·出納할 경우 當使-式目都監의 使-와 함께 검토하여 申聞할 권한까지 가졌다. 말하자면 監察司는 공신책봉의 실질적 주장기관이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式目都監은 功臣冊奉의 節次 등 형식적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監察司(御史台)는 冊封 대상자의 심사 및 절차의 지휘 등 실질적 主掌機關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鄭仁卿 녹권의 〈5〉에 제시된 功臣都監의 최고 책임자로서 監察大夫가 別監에 임명되었다고 본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전통은 鮮初의 功臣都監員 구성에도 이어져 鄭津·沈之伯 녹권에 제시된 3명의 別監 가운데 한 명은 司憲府의 侍史이거나 中丞이었던 것이다.

이어 녹권 끝 부분의 구성을 鄭仁卿의 것과 鮮初의 것을 비교하여 검토키로 한다. 鄭仁卿 錄券 〈4〉의 끝에 「至元二十五年六月一日…錄券施行」은 鄭津 錄券에서도

洪武二十八年三月初七日右承旨翊載開國  
功臣通政大夫經筵參贊官寶文閣直學士知製  
教知戶曹事臣閔汝翼伏奉王旨依申敎事是去  
有良允錄券施行  
洪武貳拾捌年閏玖月 日

이라고 하여, 施行日字·承旨의 王旨 伏奉·「依申敎…」의 끝 표현 등이 형식상 일치한다. 沈之伯의 것도 같다.

다만 鮮初의 錄券은 功臣都監員의 명단 앞에 別行으로 그 시행일자를 제시한데 반해 鄭仁卿 錄券에는 그 시행일자가 없으며 〈5〉부분에 이미 이상의 일자와 「都監員」 석자가 連記되어 있다. 생각컨대 시행일자가 빠진 녹권이 있을 수 없을 것이므로 〈5〉의 日字는 본 錄券의 시행일자로 보고, 「都監員」은 별행으로 처리하여 그 뒤의 명단 앞에 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功臣都監員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기로 한다. 高麗時代에 功臣都監의 官屬에 대해서는 史書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다만 世宗朝에 이루어진 《龍飛御天歌》 제78장의 註에,

…태조의 개국초에 먼저 공신도감을 두어 褒賞之典을 모두 거행케 하였다.

고 하고, 그 細註에

功臣都監 判官二人 從八品 錄事二人 從九品

라고 하여 判官 2人, 錄事 2人이 都監에 파견되어 있었다. 그런데 鄭仁卿 錄券에 따르면 忠烈王代에도 都監員으로 禮賓寺의 承(丞)同正·注簿同正의 判官 2人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高麗後期 ~ 朝鮮初期에도 都監員의 구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 외에 공신책봉에 필요한 官署 및 官屬으로는 典理司-正4品 捷郎 1人, 密直司-正3品 知申事인 左承旨 1人, 判書-正3品, 奉翊大夫 2人·從2品 匡靖大夫 2人, 監察司-別監으로서 正3品職 監察大夫 1人 등이었다. 즉, 전체 구성원의 등급은 判官(都監員)·捷郎(典理司員)·左承旨(知申事)·判書·別監(監察司)의 5단계인 셈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鄭仁卿 녹전의 끝 부분을 정정하면 다음과 같다.

錄券施行至元二十六年己丑五月 日

都監員

判官禮賓承同 趙臣烈

禮賓注簿同正 朴藝

典理司員捷郎朝頭大夫文翰侍讀學士充史館修撰官知製誥春宮侍讀事

鄭玄繼

知申事正獻大夫密直司左承旨判六府寺世子詹事 柳階

判書奉翊大夫密直學士文翰學士承旨 權眞

判書奉翊大夫知密直司事上將軍世子元元賓 蔡謨

判書匡靖大夫僉議參理上將軍世子貳傳 印侯

判書匡靖大夫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監修國事世子師 許洪

監察司別監奉翊大夫知密直司監察大夫寶文署大學士世子元賓 安(職印)

이에 반해서 鮮初의 功臣都監 구성은, 鄭津 錄券의 경우 錄事(權知都評議錄事)-2인, 判官-通德郎(正5品上) 1人·宣教郎(從6品上) 1人, 副使-奉正大夫(正4品上) 2人, 使-通訓大夫(正3品下) 1人·나머지 1人은 결원, 判事-都評議使司 2人, 吏曹員으로는 佐郎-2인, 正郎-2人, 議郎-2人, 知曹事-1人(결원), 典書-2人(결원), 兼典書-1人(결원), 判事-1人(결원), 別監으로는 左承旨-1人, 大將軍-1人, 司憲侍史-1人이었다. 沈之伯 錄券도 그 구성원은 직급에 약간의 차만 있을 뿐 조직면에서 鄭津 錄券과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鮮初의 功臣都監은 錄事·判官·副使·使·判事의 都評議使司 계열, 佐郎·正郎·議郎·知曹事·典書·兼典書·判事의 吏曹 계열, 承旨·大將軍·司憲府의 官屬인 別監 계열로 구성되었다고 하겠다. 鮮初의 原從功臣은 그 策功의 규모가 커던 만큼 功臣都監의 구성원도同一職을 2명 또는 3명으로 하는 복합체계였던 것 같다. 그러나 구성원칙에서는 前者の 都監員과 後者の 都評議使司員, 典理司員과 吏曹員, 別監에 모두 監察司(司憲府)의 관속이 임명된다는 점이 공통이다. 결국 高麗 忠烈王代와 鮮初의 양 시대에 功臣都監의 구성은 외형적 규모에 차이가 있으나 그 참여 관서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하겠다.

鮮初의 공신녹권은 공신도감원의 열거로 녹권이 완성되지만 鄭仁卿 녹권은 말미에 受勳者에 대한 策功文이 추가되어 있어서 형식상 대조된다. 이 策功文의 부가 형식은 鄭仁卿 녹권만을 보면 그 眞偽가 미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鄭仁卿과 함께 책봉된 金富允의 녹권에 그 策功文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 鄭仁卿 녹권의 策功文은 신빙되어야 할 것이다. 즉 「高麗史」 卷107 金富允傳에 인용된 錄券(2등공신녹권)의 내용에,

己巳年에 과인이 元朝로부터 귀한, 婆娑府에 이르되 林衍이 난을 일으켜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들었다. 시종하는 신하들이 놀라 이찌할 줄을 모르는데 너는 능히 이롭고 해로운 것을 아뢰어 과인을 도와 원나라 조정(天廷)에 돌아가 마침내 황제의 권속(公主)을 데리고 請兵하여 동쪽으로 돌아와 간사한 자를 주멸하고 나라를 회복시켜 지금에 이르렀다. 내 너의 공을 가상히 여겨 元朝의 제도를 준수하니 공신은 죄가 있더라도 열 번 범한 뒤에 한 번 논하며 자손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로 하라. 마땅히 짐의 뜻을 받들어 더욱 心力を 다하여 네 자손을 훈계하여 나라와 더불어 함께 쉬게 하라.<sup>40)</sup>

고 한 것이 鄭仁卿 녹권의 <6>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功臣錄券을 인용하였을 「1262년 尚書都官貼」에는 「內外子孫等乙良來次宣赦良中」이라 한 것과 위에 든 鮮初 녹권에서 「宥及後世教是齊」라고 극히 간략하게 표현된 教典과는 대조적이다.

이 策功文의 핵심은 공신자손에 대한 면책특권의 보장이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는 元朝의 것을 모델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 策功文을 녹권에 첨부하는 형식은 忠烈王 이후에 수용되었다고 하겠다. 이 策功文은 최종적으로 錄券과 분리되어 별도의 형식으로 제도화되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朝鮮朝에 공신에게는 錄券과 教書를 분리, 사급하였는데<sup>41)</sup> 내용상 前者는 鄭仁卿 錄券의 <1> ~ <5>에, 後者는 그 <6>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鄭仁卿 錄券에 나타난, 功臣에 대한 賞典을 살펴보기로 한다.

至元 24년(忠烈王 13, 1287)에 口傳된 王旨에 의해 설정된 三韓後壁上功臣은

40) 「忠烈卽位 錄侍從功 賦錄券曰 己巳 寡人歸自元朝 至婆娑府 聞林衍構亂 危社稷 從臣震驚 莫知所圖 爾能數陳利害 來輔寡躬 還入天廷 途蒙帝眷 諸兵而東 誅姦復國 以迄于今 子嘉乃功 遷元朝之判 功臣雖有罪 十犯然後一論 至子孫亦如之 宜體朕意 益竭心力 訓爾子孫 與國咸體」

41)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1981, pp. 79-80.

己巳-〈4〉에서 錄券의 편집자가 정정한 것이 옳다(元宗 10, 1269)年 林衍이 元宗을 폐하고 安慶公 淬을 세워 정변을 일으켰을 때 元으로부터 귀한하는 世子(忠烈王)를 호종한 신료들을 忠烈王이 일단 策功한 뒤 그 格을 높여 재차 策功한 것이다. 「高麗史」卷29, 忠烈王世家 8年(壬午) 5월 庚申條에는 이 때의 策功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敎하노라…… 己巳年에 고려로 돌아온 때 婆娑府에 이르러 变란이 있음을 듣고 조정(元)에 돌아가 시종, 보좌한 將軍 丁伍孚·鄭仁卿·車得珪·李之底, 大府尹 金應文, 郎將 金義光을 일등공신으로 삼으며 大將軍 羅格·池允輔, 將軍 林庇, 捷郎 李承衍, 將軍 金富允, 中郎將 黃就, 郎將 聶周碩·梁眞, 正郎 白佐明, 郎將 金位良은 이등공신으로 삼아 田民을 賦하노라……

이러한 策功에 따라 忠烈王 13년 3월 병진에 각기 奴婢(臧獲) 2口와 田 100結이 사급되었다. 이 것이 바로 鄭仁卿 錄券에 제시된 三韓壁上功臣이다.

〈表 1〉 三韓後壁上功臣의 포상내용(鄭仁卿 錄券)

|     |  |  |
|-----|--|--|
| 1 등 | 上將軍 鄭仁卿, 大將軍 丁五<br>富, 李之底, 將軍 金議光, 三<br>司使 金應文(死), 將軍 申得圭                      | 己巳年 賦給田畠 15結에 100결<br>추가, 壬午年(忠烈王 8)의 王<br>旨로 奴婢 4口 賦給 |
| 2 등 | 知申事 羅格, 上將軍 池允輔,<br>大將軍 林庇, 副知密 直事致任<br>李承衍, 聶周石, 將軍 金富允,<br>中郎將 梁眞, 正郎 白佐明(死) | 전의 賦給田畠 15結, 奴婢 2口<br>에 田畠 100結, 奴婢 4口를 加<br>給         |

「高麗史」世家 忠烈王 8년조의 1·2등 功臣 직함이 鄭仁卿 녹권의 그것보다

낮은 것은 이들에 대한 녹권이 5년 뒤인 忠烈王 13년에 土地 100結과 奴婢 2口씩 (계 4口)을 사급할 때의 직함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忠烈王 13년의 三韓後壁上功臣 책봉에는 형식상 1·2등의 구별이 설정되었으나 田民은 동등하게 사급되었다고 하겠다. 단, 鄭仁卿 녹권에서 2등으로 책봉된 자들에게 「前의 賦給田畝 15結에다 田畝 합하여 100結·奴婢二口에다가 4口 등을 자손에게 加給할 것(前矣賜給數田畝并十五結良中尊良田畝並一百結〔奴婢二口良中導良〕四口等乙子孫亦中加給向事)」이라고 한 부분의 [ ] 속 표현은, 문맥의 연결에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전에 이들에게 2口씩의 노비를 별도로 사급했을 이유가 없었다는 데서 〈家乘〉의 편집시에 잘못 기재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三韓後壁上功臣의 책봉이 있기 전에 그 책봉대상자들에게 사급된 토지 15結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鄭仁卿 녹권에서는 己巳年 隨從功臣의 策功에 수반된 賦田이 그 15結이었다. 하지만 「高麗史」나 「高麗史節要」 등에는 이 사실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隨從功臣은 功臣號도 없는 小功臣이어서,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된 15結의 토지는 지극히 의례적인 것이어서 주목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小功臣에게 지급되었다고 믿어지는 15結의 크기는 鮮初 太祖原從功臣田의 최하한으로서, 原從功臣 1·2등에도 들지 못하는<sup>42)</sup> 의 크기에 해당하며 沈之伯에게 大將軍 李和英의例로서 지급된 것과 같다.

또 15결의 토지는 文宗 3년 5월에 정해진 兩班功陰田柴法의 지급 최하한인 5品의 田 15結 柴 5結에서 柴 5結을 무시한 田額에 대비되는 것이다. 「高麗史」卷 78, 食貨志의 功陰田柴 규정은 志 찬자에 의해 功臣田의 범주로서 설정되었는데 이 점 또한 忠烈王代에 小功臣에 대한 15結의 토지 지급이 功陰田柴制度와

42) 「傳旨更曹 太祖原從及回軍功臣 太宗原從功臣 自在潛邸 以至開國 不避艱險 委身捍衛 或奉義從順以安東土 其功不細 今其子孫之任官者益寡 率在鄉曲 遂爲編氓 義甚未安 其一等嫡子 欲授正八品 嫡孫 正九品 二等嫡子 從八品 嫡孫 從九品散官 以報祖父之功 上項功臣嫡子嫡孫 備細訪聞以啓但太祖原從功臣 初不分等第 以田三十結奴婢三口授賜者 爲一等 田二十五結奴婢二口授賜者 爲二等 且咸吉道住居功臣子孫 依其道人陞授之例 除職」(世宗實錄, 卷117, 29년 9월 戊申)

깊이 관련된 것임을 말한다고 하겠다. 고려시대의 三韓功臣·三韓(後)壁上功臣<sup>43)</sup> 등 大功臣이 아닌 個別功臣의 策功例로는<sup>44)</sup>, 仁宗 4년(1126) 拓後京을 推忠靖國協謀同德衛社功臣號를 가하고 노비 10口와 田 30結을 사급한 것이 확인된다.<sup>45)</sup> 拓後京의 功臣田 30結은 文宗 3년의 兩班功陰田柴 지급상한인 1품·門下侍郎平章事 이상에 지급되는 田 25結보다 불과 5結이 더 많은 액수이다. 또 拓後京의 功臣田 30結은 명목상으로는 鮮初 太祖原從功臣인 鄭津에게 中樞院副使尹邦慶의 예로 지급된 30結과 같다. 명목상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高麗時代의 個別功臣田, 功陰田, 小功臣田 따위는 모두 鮮初의 原從功臣田에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鄭仁卿 녹권에 설정된 隨從功臣田 15結은 功陰田柴의 연장으로서 鮮初原從功臣田에 이어지는 중간적 존재였다고 생각된다.

## VII. 맷 는 말

이상과 같이 高宗末 ~ 忠烈王末까지 任用하였던 鄭仁卿의 政案과 忠烈王 13년에 그를 三韓後壁上功臣의 一等功臣에 책봉한 錄券을 소개하고 자료의 전래과정으로부터 人事制度, 錄券의 발급양식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鄭仁卿 政案은 職, 階의 高下에 따라 5~4品 이하는 「判」·「判…敎」에 의해

43) 고려시대의 功臣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周藤吉之의 “高麗初期の功臣、特に 三韓功臣の創設” 東洋學報, 66-1.2.3.4, (1985) 가 있다.

44) 元宗 10년(1269) 祿科田이 설정될 때부터 柴地는 特田의 지급에 부수되지 않았다.

45) 「(仁宗 四年 六月)以拓後京 為推忠靖國協謀同德衛社功臣檢校太子太師守太保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戶部事兼西京留守使 要黃氏 為齊安郡大夫人 賜衣服金銀器布帛鞍馬 及奴婢一十口田三十結」(高麗史節要, 卷9)

人事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御史台의 名貼이 수반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職階 5~4品 이상은 「下批」로써 人事가 이루어졌으며 御史台의 名貼은 요구되지 않았다. 두 형태의 인사가 모두 吏·兵部의 人事願(案)인 朝謝를 거친 뒤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위의 職·階 名貼이 필요하고 상위의 그것에 名貼이 필요치 않았던 것은 御史台의 署經權 強度와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下位職階 인사의 근거가 되는 「判」·「判…數」는 國王의 직접적인 영향력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의 근거였던데 반해 「下批」는 國王의 직접적 영향력이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사의 근거였다고 하겠다.

鄭仁卿 錄券은 一次策功과 賞賜로 15結을 사급한 뒤 策功의 格을 높이고 賞賜도 확대하여 三韓後壁上功臣號에 土地 100結·奴婢 4口를 가급하는 형식으로 발급된 것이다.

이 錄券에 따르면, 공신책봉의 실질적인 주무부서는 監察司였고 여기에서 名貼을 담당하였다. 단 그 法制的 정리는 式目都監에서 맡았다. 監察司는 名貼에 따른 申聞權까지도 분장하였으며, 監察大夫가 功臣都監의 최고 책임자인 別監에 임명됨으로써 공신책봉은 명실상부하게 監察司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전통은 鮮初의 原從功臣錄券에 설정된 3인의 功臣都監別監 가운데 1인이 司憲府의 官屬이었던 데에도 찾아진다. 功臣都監의 구성원칙은, 규모에는 차가 있지만, 高麗時代와 鮮初의 차가 없었다. 또 공신책봉의 절차도 두 시대에 별다른 면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공신책봉의 내용 즉 賞賜의 원칙에도 큰 변화가 없었을 것임을 추정케 한다.

鮮初 太祖原從功臣의 賦田額은 鄭仁卿 녹권의 一次策功 賦田額 15결, 또는 文宗 3년의 功陰田柴 下級인 15結로부터 仁宗朝 拓俊京의 策功에 설정된 30結의 범위에 수렴되었다. 이로 미루어 高麗時代의 功陰을 포함한 하급의 個別·小功臣類는 鮮初의 原從功臣으로 포괄되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錄券 말미에 策功文이 부가된 형식은 元의 制度를 본뜬 것으로, 朝鮮朝에 들어오면서 이 들은 분리되어 錄券과 策封敎書로 분리되어 정형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参考文獻은 脚註로 대신함〉

본디 이 論文의 원자료인 《瑞山鄭氏家乘》은 여운영씨에 의하여 발굴·연구되었으나 論文을 初矯인 상태로 발간하지 못한채 1993년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여 학계에 소개되지 못하였다.

그러던중 1995년 1월 이 논문의 共同研究者인 南權熙에 의하여 가족들에게 남겨진 자료가 알려지게 되었고 1995년 3월 11일 古文書學會의 발표를 통하여 그 全文이 별도로 소개되었다. 本考는 가족들의 양해아래 書誌學的分析과 鄭仁卿의 略傳을 추가하고 전반적인 수정을 거쳐 다시 수록하게 된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A Study on the Biographical Records and Meritorious Ceritification awarded to Jeong In-Kyung in Koryo Dynasty

### 〈Abstrac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iographical records and Meritorious Certification of Jeong In-Kyung(鄭仁卿).

The analysis is made in the respects of :

- 1) Bibliographical analysis of the 〈SeoSan JeongShi GaSeung; 瑞山鄭氏家乘〉
- 2) Biographical study of Jeong In-Kyung
- 3)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in the period of king ChungYeul(忠烈王)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1. The 〈SeoSan JeongShi GaSeung〉 is consist of biographical records of Jeong In-Kyung and his father. This book was published by wooden movable type printing at 1819.
2. The JeongAn(政案) is primary source to give an official order and nomination. Through these records, we can draw the genealogical charts and his personal history.
3. The Meritorious Certification refers to an authorized document which was conferred to subjects that had been devoted themselves with royalty for the king ChungYeul.
4. In the analysis of main body of the certification, this thesis research :

- 1) the reason of political accident at the year Gisa(己巳)
  - 2) the instances of merits by grade of awardees
  - 3) the awards and privilege according to merit grade
  - 4) the organization in partial charge of awarding
  - 5) the staff and their titles of the office of meritorious subject affairs
  - 6) additional notes of the awarding that were originated by Yuan (元) Dynasty
5. This thesis confirms that these biographical records and the certification are of high value from the viewpoint of primary historical materials concerning the personnel administrations on latter periods of Koryo Dynasty, and also a linguistic material of Idu(吏讀) writing system was used.